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기간 중 유지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GDP 대비 2%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대비 소폭 개선돼 GDP 대비 1.6% 수준으로, 2019년부터는 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2.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부터 소폭으로 상승해 2021년에는 4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건실한 우리 경제 상황과 해외 주요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높은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2. 중기 자원 배분 기본방향

중기 자원 배분은 ①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추진 ②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분야에 집중 투자 ③국가안보·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 등 재정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적극적 확장 재정 추진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등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성장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SOC분야에서도 시설투자는 축소하면서 생활밀착형 안전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보·안전분야에서는 사병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방위력 개선에 투자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및 해경·소방의 현장대응 능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 사람 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세제개혁, 재정 민주화 및 분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추가 재정 요인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8년 예산 편성부터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조세지출 정비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탈루세금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수입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이 '제안'하고 '결정'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시 일부 사업은 시범 도입 과정을 거쳤으며, 2019년부터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논의·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5~2019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세외수입	26.4	26.4	26.7	28.1	27.4	26.7	0.3
기금수입	145.6	145.6	152.2	155.7	163.6	171.8	4.2
재정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8
예산지출	274.7	280.3	295.0	313.3	328.1	343.4	5.7
기금지출	125.9	129.8	133.9	140.0	148.5	157.5	5.8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33.0	-38.4	-44.3	
(GDP 대비)	[-1.7]	[-1.7]	[-1.6]	[-1.8]	[-2.0]	[-2.1]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49.1	793.0	835.2	
(GDP 대비)	[40.4]	[39.7]	[39.6]	[39.9]	[40.3]	[40.4]	

조세

■ 2017년 국세 징수 실적

2017년 우리 국민이 낸 국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65조4천억원으로, 2016년 242조6천억원 대비 22조8천억원(9.4%) 증가했다. 2017년 추경 세입예산 251조1천억원보다도 14조3천억원(5.7%) 증가해 2016년에 이어 초과 세수를 달성했다.

2016년 세수실적 증가는 당해 법인실적 개선과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6년 235조7천억원보다 22조8천억원 증가한 258조5천억원이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2016년 6조8천억원보다 1천억원 증가한 6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9조2천억원으로 2016년 52조1천억원보다 7조1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 법인실적 개선(유가증권시장 12월 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16년 63조8천억원에서 2017년 68조4천억원으로 7.2% 증가) 등에 기인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67조1천억원으로 2016년 61조8천억원보다 5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수입증가(수입액이 2016년 4천62억 달러에서 2017년 4천784억 달러로 17.8% 증가)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 및 소비 증가 등이 이유였다.

소득세도 2016년 68조5천억원보다 6조6천억원 증가한 75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세가 34조원으로 2016년 31조원보다 3조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가 2016년 14조3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증가했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2016년 13조7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증가한 15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축소(공제율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 감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으로 2016년 5조4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증가한 6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개별소비세는 2016년 8조9천억원보다 1조원 증가한 9조9천억원을, 관세는 2016년 8조원보다 5천억원 증가한 8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소득공제 조정에 따라 2016년 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증가한 기저효과 등으로 2016년 1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1조2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주세의 경우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2016년 3조2천억원보다 2천억원 감소한 3조원을 기록했다.

2017년 국세징수 실적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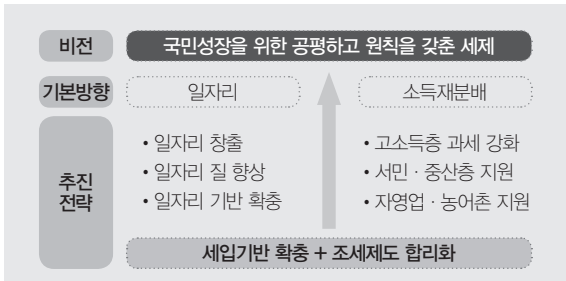
구분	2016년 실적	2017년	
		예산	실적
총국세	242.6	251.1	265.4
일반회계	235.7	244.0	258.5
소득세	68.5	69.6	75.1
종합소득세	14.3	15.0	16.0
양도소득세	13.7	12.1	15.1
근로소득세	31.0	33.1	34.0
퇴직소득세	1.6	1.4	1.2
법인세	52.1	57.3	59.2
상속증여세	5.4	6.0	6.8
부가가치세	61.8	62.6	67.1
개별소비세	8.9	9.0	9.9
증권거래세	4.5	4.0	4.5
인지세	0.9	0.9	0.9
과년도수입	4.1	3.8	4.4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6
관세	8.0	9.0	8.5
교육세	4.9	5.1	5.0
종합부동산세	1.3	1.4	1.7
특별회계	6.8	7.1	6.9
주세	3.2	3.3	3.0
농특세	3.6	3.8	3.8

■ 2017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2017년 세법 개정은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했다.

2017년 세법개정 방향



■ 일자리 지원

고용 없는 성장, 청년·여성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수록 세제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세제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임금 증가·정규직 전환·상생 협력 등을 지원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창업·벤처 활성화 등 일자리 기반 확충에도 힘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간접지원에서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 및 공제를 대폭 확대해 고용증가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졸업생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하고,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임금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일몰 기간도 1년 연장했다.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 협력 촉진을 위해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 종료하고,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토지취득이나 배당은 가중치에서 제외하고,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상생 협력은 가중치를 대폭 높였다.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 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을 확대해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확대했다.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했다. 또한 재기 자영업자 등에게 체납세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3천만원 한도)하고, 신성장 벤처 창업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2억원 한도)했다.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유도했다.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은 축소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측면에서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조정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40%, 5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42%로 바꿨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은 20%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세목 간 형평성과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2018년부터는 5%, 2019년부터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TC)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을 했다.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D)의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도 인출을 허용했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2년간 늘리고 중고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1년간 확대했다.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세율을 인하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의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했다.

■ 세입기반 확충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대기업의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세원 투명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했다.

법인세율은 현재 과표 구간에 '3천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연구개발(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2%로 조정하고 일반 R&D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30%에서 25%로 축소했다.

대기업 생산성 설비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축소했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사업연도 소득의 80%에서 2018년 귀속분부터는 70%, 2019년 귀속분부터는 60%로 점진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고배당 기업의 주주 배당소득중대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등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했다.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고 이자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는 '신

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실 신고확인제도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는 등 역외 세원·다국적 기업 관리도 강화했다.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및 기간을 조정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으며,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제 납부수단에 추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공정거래

■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위 수장으로 맞으며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시작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굳어진 분야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해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했다. 분야별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엄하게 다스렸다.

공정위는 2017년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 불리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LS전선, 하이트진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A)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민생, 공공입찰, 국제카르텔 등 총 69건의 국내외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3천637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소비자기본법도 개정했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렸던 오명을 씻기 위해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를 하고 있다.